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	2004가단65211 손해배상(기)
주위적 원고	1. A
	2. B
	3. C
	4. D
원 고	E
예비적 원고	1. F
	2. G
	3. H
	4. I
피 고	1. J 주식회사
	2. K
변 론 종 결	2006. 6. 14.
판 결 선 고	2006. 8. 16.

주 문

1. 가. 피고 J 주식회사는 주위적 원고 A에게 1,500,000원, 주위적 원고 B, C에게 각 3,000,000원, 주위적 원고 D에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3.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12.부터 2006. 8.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나. 피고 K은 피고 J 주식회사와 각자 위 가.항 기재 각 금원 중 주위적 원고 B, C에게 각 1,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4. 3. 12.부터 2006. 8.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다. 피고들은 각자 예비적 원고 F, G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06. 3. 4.부터 2006. 8. 16.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주위적 원고 A, D의 피고 J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피고 K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나. 주위적 원고 B, C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E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다. 예비적 원고 F, G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예비적 원고 H, I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3%는 주위적 원고들, 원고 E 및 예비적 원고들의, 27%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1.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주위적 원고들 및 원고 E에게 각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예비적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가. 주위적 원고 A, B, C, D에게 각 7,000,000원, 원고 E에게 10,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나. 예비적 원고들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주위적 원고들은 2006. 1. 6.자로 아래에서 살펴보는 주주권 침해 부분 청구에 관하여 예비적 원고들을 추가하는 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2006. 2. 22.자 결정으로 이를 허가하였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5호증, 을제1, 3, 7호증, 을제5, 8, 9, 10,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 을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및 증인 L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 J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전자전기기계기구 및 관련기구와 그 부품의 제작, 판매, 수금대행 및 임대, 서비스업, 반도체 및 관련제품의 제조,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고, 피고 K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이다.

(2) 주위적 원고 A는 M단체 N센터의 소장이고, 나머지 주위적 원고들 및 원고 E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위 N센터의 실행위원들이며, 원고 E과 예비적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주주들이다.

나.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

피고 회사는 2004. 2. 4. 아래와 같은 사항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여 피고 회사의 제35기 정기주주총회(이하 '이 사건 주주총회'라고 한다)를 개최한다는 내용의 주주총회소집통지 및 공고를 하였다.

(1) 보고사항 - 감사보고, 영업보고, 주식소각 결과보고

(2) 부의안건

제1호 의안 : 제35기(2003. 1. 1. ~ 2003. 12. 31.)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안)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사외이사, 감사위원회 위원,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 :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

다. M단체의 질의사항 통보

M단체는 2004. 2. 24.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i) 영업보고와 관련, ①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피고 회사의 임원에 대한 징계여부,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한 피고 회사의 내부절차, 당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던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피고 회사가 관련이 있는지 여부, ② 피고 회사의 O에 대한 출자 경위 및 타당성, (ii) 제1호 의안인 재무제표 승인의 건과 관련, P그룹 구조조정본부와 관련된 피고 회사의 자금지출 내역 및 회계처리, (iii) 제2-3호 의안인 사내이사 선임의 건과 관련, 정치자금법위반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Q 사내이사 후보의 재선임의 적정성 여부에 관하여 질문을 하겠다는 내용의 질의서(갑제5호증)를 작성하여 피고 회사에게 송부하였다.

라. 이 사건 주주총회의 개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1) 피고 회사는 2004. 2. 27. 09:00경 서울 중구 R빌딩 S에서 앞서 본 보고사항 및 부의안건을 회의목적사항으로 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였고, 피고 K은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장을 맡아 그 의사진행을 하였다.

(2) 원고 E은 주주 본인으로서, 주위적 원고 A는 예비적 원고 F으로부터, 주위적 원고 B은 예비적 원고 G으로부터, 주위적 원고 C는 예비적 원고 H로부터, 주위적 원고 D은 예비적 원고 I으로부터 각 주주권을 위임받아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하였다.

(3) 한편, 이 사건 주주총회장 내에는 의사절차의 제반업무를 담당하는 피고 회사 직원 4-5명, 발언 주주에게 마이크를 건네주는 직원 4명, 주주총회 장내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피고 회사가 T으로부터 용역한 진행요원 10여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었다.

2. 주장 및 쟁점의 도출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 주장의 요지

(가) 명예훼손 내지 모욕

피고 K은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 의사를 진행하면서, 주위적 원고 A, B, C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발언을 하였다.

(나) 폭행

① 제1호 안건 상정 후, 주위적 원고 B이 소외 U에 대한 공소장을 제시하고, 원고 E이 피고 회사의 임직원 윤리강령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게시하면서 피고 회사 임원들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관하여 질문할 무렵, 피고 회사에서 고용한 진행요원들이 주위적 원고들이 앉아 있는 좌석으로 뛰어 들어와 위 공소장과 윤리강령 플래카드를 빼앗고, 주위적 원고 B, C, 원고 E을 각 폭행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② 주위적 원고들과 원고 E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퇴장 후, 위 S 로비에서 기자들의 질의에 답변할 무렵, 피고 회사가 고용한 경비요원들이 강제로 위 원고들을 건물 밖으로 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주위적 원고 D이 밀려 넘어지면서 대리석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 주주권 침해

피고 K은 주주총회 의장으로서 주주들인 위 원고들의 정당한 질문과 의사진행 발언 기회를 보장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위 원고들의 ① 피고 회사 임원들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② 피고 회사의 O에 대한 출자, ③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정당한 질문 및 발언권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표결처리를 강행하여 주위적 원고들 내지 그 주주권의 귀속주체인 원고 E과 예비적 원고들의 주주권을 침해하였다.

㈑ 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K 내지 위 진행요원들의 사용자로서, 피고 K은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 각자 위와 같은 명예훼손 내지 모욕, 폭행, 주주권침해로 인하여 주위적 원고들, 원고 E 내지는 예비적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⑵ 피고들 주장의 요지

㈎ 명예훼손 내지 모욕 주장에 대하여

주위적 원고들은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채 단순히 피고 K이 주위적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여 그 청구원인을 제대로 특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설령 피고 K이 이 사건 주주총회를 진행하면서 다소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 원고들이 동일한 취지의 질문을 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복하여 의사진행을 방해함으로써 위 피고를 흥분시켜 유도한 것으로서 우발적 발언에 불과하다.

㈏ 폭행 주장에 대하여

피고 K이 주위적 원고들 내지 원고 E이 게시한 플래카드를 철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 정당한 질서유지권의 행사이고, 위 원고들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퇴장한 후, 주위적 원고 D이 바닥에 넘어져 다친 사실은 있으나, 이는 위 원고들 주변에 많은 사진기자들이 몰리는 바람에 주위적 원고 D이 밀려 넘어진 것에 불과하고,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이 주위적 원고 D을 밀쳤다고 볼 증거는 전혀 없으며, 그 밖에 피고 회사 소속 직원이 주위적 원고들 내지 원고 E을 폭행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 주주권 침해 주장에 대하여

① 주위적 원고들과 원고 E의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의 질문 내지 발언들은 주주총회의 회의목적사항과 전혀 무관하거나 관련성이 희박한 것으로서, 주주총회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하여 상법 및 관련규정 등에 따라 그 제한이 불가피하였다.

② 피고 K은 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주위적 원고들과 원고 E이 위와 같이 주주총회의 목적사항과 전혀 관련 없는 질문을 하였음에도 상당한 발언기회를 부여한 후, 정상적으로 표결절차를 밟은 것이다.

③ 피고 K이 주위적 원고들과 원고 E의 일부 발언을 제한한 것은, 주주총회의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상법 제366조의2에 규정된 주주총회 의장의 질서유지권을 정당하게 행사한 것이므로, 위와 같이 정당한 질서유지권의 행사에 의하여 위 원고들의 일부 발언이 제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주위적 원고들, 원고 E 내지 예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적 원고들의 주주권이 침해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

나. 쟁점의 정리

당사자들의 주장을 정리하면 결국 이 사건의 쟁점은, ① 이 사건 주주총회의 진행 경위와 전체 흐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K이 주위적 원고 A, B, C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는지 여부, ② 이 사건 주주총회의 구체적 상황과 주위적 원고들과 원고 E의 퇴장 후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당시의 정황에 비추어, (ⅰ)피고 회사의 직원들이 위 원고들을 폭행하였는지 여부, (ⅱ) 만약 그러한 사실이 있다면, 피고 K이 그 폭행 사실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지 여부, ③ 주위적 원고들과 원고 E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행한 질문 내지 발언이 정당한 주주질문권의 행사였는지 여부, 피고들이 주위적 원고들, 원고 E 내지 예비적 원고들의 주주권을 침해하였는지 여부로 압축되는바, 이하 차례로 살펴본다.

3.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1][2]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4, 7, 10, 11호증, 을제1, 3, 12호증, 을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갑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영상 및 주위적 원고 A 본인신문결과, 증인 V의 증언, 증인 L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주주총회 개회발언 및 보고사항

---

1) 앞서 본 쟁점들은 결국 이 사건 주주총회의 진행 과정에서 파생된 문제들인데,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위 주주총회의 진행 과정을 전체적으로 조망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이하 그 진행과정을 시간대별로 상세히 살펴본다.

2) 사실관계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인정사실 중 일부에 대하여는 을제3호증 속기록의 페이지와 갑제3호증, 을제4호증의 1 내지 4의 각 주주총회 동영상의 시간대를 병기하기로 한다[예컨대, 속기록 15p, 갑제3호증의 동영상 00:03, 을제4호증의 2 35:00경 시간대의 발언 내지 사실관계는 '(15p, 갑제3호증 00:03, 을제4호증의 2 35:00)' 형식으로 표시한다]. 다만, 속기록 중 일부 누락된 부분은 관련 동영상 시간대만 표시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 이 사건 주주총회는, 피고 회사의 사장 W의 사회로 2004. 2. 27. 09:00경 개회되어 출석주주 및 주식수 보고를 마친 후, 주주총회 의장인 피고 K이 단상에 나와 의장인사를 하고 의사일정을 진행하였다.

㈏ 피고 K은 주주들에게 피고 회사의 2003년 경영성과 및 2004년 경영전략에 대하여 설명한 후, 보고사항의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혹시 보고사항에 대한 질문이 있으시더라도 회의목적사항을 상정한 후에 질문해 주시면 성실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감사보고를 진행하려 하였고, 이에 주위적 원고 A가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달라고 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0p, 을제4호증의2 25:12).

㈐ 그 후 감사위원 X이 피고 회사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영업보고서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적정·적합·정확하게 표시되어 있다는 내용의 감사보고를 하였고, 그 후 위 Y이 미리 배포한 영업보고서를 토대로 피고 회사의 영업실적은 매출이 43조 5,820억원으로 전년 대비 9.5%가 증가하였으며, 당기순이익은 5조 9,59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 928억원이 감소하였다는 내용의 영업보고와 주식소각결과보고를 하였다.

㈑ 보고사항의 보고를 마친 후 주위적 원고 B이 '최소한의 주주권 행사를 이런 식으로 박탈시키면 이 주주총회를 할 필요가 없고, 주주총회 무효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주위적 원고 A와 함께 의사진행발언 내지 주주질문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 K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사일정을 그대로 진행하였다(15p, 갑제3호증 00:03, 을제4호증의 2 35:00).

⑵ 제1호 의안의 상정과 통과

㈎ 피고 K이 제1호 의안을 상정하려 하자, 주위적 원고 A, B, 원고 E이 보고사항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과 관련하여 위 피고에게 의사진행발언을 요청하였으나 피고 K은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각 호별로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난 뒤에 개인별 발언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출석하신 주주님들께 고르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 짧고 간단하게 해주시고 의안과 직접 관련된 질문만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안과 관련되지 않은 질문은 받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17-18p, 갑제3호증 01:00, 을제4호증의2 36:00).

㈏ 그 후 피고 K이 제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상정하였고, 주위적 원고 A가 큰소리로 "주주번호 Z, F 대리인 A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주총목적 사항에 대한 토론만이 주주총회의 목적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자, 피고 K은 "주주총회의 질서유지권을 위해서 만약 시끄럽게 하면 의장의 직권으로 제제조치를 가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의사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에 주위적 원고 A가 다시 항의하자, 피고 K은 "이것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은 진행들이 좀 가도록 해요"라고 말하면서 의사를 그대로 진행하였고, 위 원고 A는 "아니 의장, 글로벌 기업을 지향한다는 J가 주주총회를 어떻게 이렇게 진행합니까, 이것이 J의 주주총회입니까"라고 말하는 등 계속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서 격렬히 항의하였다(18p, 갑제3호증 01:36, 을제4호증의2 37:12).

㈐ 피고 K은 제1호 안건의 설명을 마친 후, ① 주주 AA에게 발언권을 부여하였고, 위 AA가 제1호 안건에 대하여 박수로 통과시킬 것을 동의하자 참석 주주의 대다수가 박수를 치면서 재청을 하였고, ② 이에 피고 K이 제1호 안건을 박수로 통과시키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냐고 묻자 주위적 원고 A는 "의장, 이의 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안건을 통과시키면 주총 무효확인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는 것을 의장께서는 아시지요"라고 말하자, ③ 피고 K은 "모릅니다, 그런 것은 없어요"라고 말한 후, 성명불상의 주주에게 발언권을 주었고(22p, 갑제3호증 03:15, 을제4호증의 2 44:42), ④ 위 주주가 감사위원에 대한 질문을 하려고 하였으나 발언권을 주지 않아 감사위원에게 몇가지 질문을 하겠다고 하면서 피고 K에게 주주들에게 자기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였으며, ⑤ 이에 피고 K은 주주들에 대한 질문권 부여와 관련 "분명하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업보고와 감사보고가 끝나고 난 뒤에 질문을 받겠다는데 왜 그렇게 시끄럽게 소동을 부리느냐 이것이지요, 그것은 남의 주총장에 와서 아주 분위기를 엉망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하면서 상법 제366조의2 및 피고 회사의 정관에 규정된 의장의 질서유지권에 관한 내용을 읽어주었다(24p, 을제4호증의2 47:43).

㈑ 그 후 주위적 원고 B은 피고 K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피고 회사의 윤리강령을 언급하면서 AB 부사장, Q 이사, AC 회장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고 하면서,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가를 떨어뜨리고 회사의 이익을 침해한 위 임원들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어떠한 징계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질문하였고, 그 때 원고 E은 주위적 원고 B의 옆에 서서 '제6장 임직원의 기본윤리 : 9. 정치활동관련, 어떠한 선거직의 후보자·정당·정치위원회에 직·간접적으로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제공하지 않는다. 제7장 윤리강령 준수의무 : 모든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징계조치를 받는 등 해당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내용의 피고 회사 윤리강령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게시하였다(29p, 을제4호증의 2 54:00).

㈒ 피고 K은 주위적 원고 B의 질문에 대하여 "AB 이사, Q 이사, AC 이사 분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은 정치자금법, 즉 실정법이라든지 우리 회사 윤리강령을 위반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지금 검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명백한 위반이라든가 등등 그것은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사로서는 아직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고, 또 이 분들이 명예를 실추시켰다, 회사의 주가를 떨어뜨렸다 등등 하는 것은 그것은 전혀 언어도단입니다"라고 답변하면서, 원고 E이 위 플래카드를 계속 게시하고 있자 "내려놔요, 내려요, 왜 남의 주총장에 와서 그런 것을 갖고 오는거야"라고 말하였다(30p, 을제4호증의 2 55:54).

㈐ 주위적 원고 B은 다시 소외 U에 대한 공소장을 제시하면서 "구조본의 AD 과장이 Q 이사를 통해서 AE당으로 불법자금이 어떻게 진입이 되었는지에 대하여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피고 회사에서 이와 관련된 자체 조사 내지 징계조치를 취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을 하였는데(30-31p, 갑제3호증 06:00), 그 발언 도중 주위적 원고들과 원고 E의 뒤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진행요원이 위 원고 B의 마이크를 뺏으려 하였으나 위 원고들이 제지하자 뒤로 물러났고(갑제3호증 06:12), 이때 피고 K은 "아, 그 진행은 뒤로 나가, 진행이 왜 그래요, 진행은 옆에 나가"라고 하였다.

㈑ 주위적 원고 B은 다시 "이런 부정을 두고 보고도 명백하게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회사가 망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 K은 "여보세요, 여기에 누가 그 분들이 부정을 해서 회사 돈을 가지고 간 것입니까"라고 말하였고, 위 원고 B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것을 지금 어디서 부정을 하는 것입니까?"라고 말하자 피고 K은 "자, 의장이 질서유지권 유지해요"라고 말하였는데(33p, 을제4호증의 2 58:45), ① 그와 동시에 뒤에 서 있던 성명불상의 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행요원들이 주위적 원고 B을 끌어내려 하자 주위적 원고들과 원고 E이 이를 제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② 그 과정에서 원고 E은 오른쪽 복도에서 진행요원들과 몸싸움을 하였으며, 주위적 원고 C는 진행요원들에 의해 왼쪽 복도로 끌려나가는 바람에 바지벨트가 풀렸고(갑제3호증 06:26경), ③ 주위적 원고 A는 "의장, 진행요원에게 폭행당했습니다, 진짜 이렇게 주총 진행하실 겁니까"라고 말하고, 주위적 원고 B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하면서 격렬히 항의하였으며, ④ 위와 같은 몸싸움이 벌어지자 피고 K은 단상에서 '저거 누구야, 우리 진행요원이야, 저거 말려, 한번 가봐'라고 말하였으며, ⑤ 위와 같은 몸싸움 상황이 정리된 다음 "회의 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진행들은 절대 다른 것을 하지 말고 진행만 보도록 해 주세요"라고 말한 후(을제4호증의 2, 01:01:30), 단상으로 성명불상의 진행 요원 중 1명을 불러서 마이크 밖에서 "몸싸움을 누가 시켰어, 그런 짓은 절대 못하도록 해"라고 하였다.

㈀ 피고 K이 다시 의사를 진행하면서 "자, 이의 없습니까"라고 말하자, 주위적 원고 A, B은 큰소리로 "이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발언권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 K이 "가만 있어요, 목소리를 좀 적게 하세요, 왜 그렇게 고함을 지릅니까, 아니, 왜 남의 주총장에 와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라고 말하자 위 원고들은 "남의 주총장이라니, 우리 회사지 왜 남의 주총장이야"라고 말하면서 격렬히 항의하였고, 주위적 원고 A는 "의장, 당신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주인이고 당신은 주주의 대리인이야"라고 말하였다. 이에 피고 K은 "아니 대리인이지요, 그런데 나도 주주다, 왜요, 몇 주 갖고 있어요, 왜 남의 회사를 보고 우리 회사라 그래요"라고 말하였고(36p, 갑제3호증 07:45, 을제4호증의 2, 01:02:30), 다시 위 원고 A가 발언권을 달라고 계속 요청하자 "안주겠어요, 어떻게 우리 회사를, 몇 주 갖고 있는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당신' 소리하면서 그렇게 남의 주총장에 와서 목소리를 올려, 몇 주 가지고 있어요, 나도 주주요"라고 말하였고, 이에 주위적 원고 A는 피고 K으로부터 의사진행발언 기회를 얻어 자신들도 피고 회사의 주주라고 하면서, 주주의 권리는 보유주식의 수에 관계없이 모두 동등하므로 주식 수에 따라 발언권을 제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다(37-38p, 을제4호증의 2, 01:03:30).

㈜ 그 후 주위적 원고 B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피고 회사 임원들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실이 확인되면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의 윤리강령에 따른 징계조치를 할 의사가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피고 K은 조사가 끝나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그 공과, 피고 회사의 내부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서 공정하게 판단하겠다고 답변하였다(39-40p, 을제4호증의 3 00:10).

㈐ 그 후 다른 주주들의 질의, 응답이 진행된 후, 주위적 원고 A는 피고 K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피고 회사가 O에 대한 출자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하면서 피고 회사가 O에 출자하여 지배주주가 된 경위, 그 지분의 처분계획, 피고 회사가 O의 2003. 5. 30. 유상증자시 약 1,100억원의 증자참여 결정을 할 때에 외부의 전문기관으로부터 O의 현황 및 미래 사업전망에 대하여 자문을 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등에 관하여 피고 K, 위 사장 Y과 사이에 약 7-8회에 걸쳐 일문일답의 형식의 질문을 하였고, 그 후 다시 질의를 계속하려 하였으나 참석 주주들 중 상당수가 위 원고 A의 계속된 질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며, 이에 피고 K은 원만한 주주총회의 운영을 위해서 더 이상의 질문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주총회 후 회사로 찾아오면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하였다(51-74p, 을제4호증의 3 13:20).

㈑ 주위적 원고 A, B은 계속하여 피고 K에게 제1호 안건과 관련된 질문에 대한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발언권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 K은 더 이상 질문은 받지 않고, 회사로 찾아오면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였고, 이의가 있으면 수정동의안을 내라고 하였다. 그러나 주위적 원고 A, B은 계속 발언권을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 K이 "그것(수정동의안 제출) 이외에는 제가 못드리겠어요, 이게 뭡니까, 우리 회사에 와서 이 언론들이 많이 있다고 말이지, 그 말도 안되는 질문을 해 가지고 시간을 끌고 하는 것이 어떻게 우리 회사입니까?"라고 말하였고, 원고 B이 "회사를 망하느냐 흥하느냐를 결정하는데 어떻게"라고 말하자 피고 K은 "왜 회사가 망해요, 회사가 어떻게 망해요", "저 친구 저거 정신병 아냐, 저거"라고 말하였다(74p, 갑제3호증14:55, 을제4호증의 3 42:14).

㈐ 그 후 피고 K은 제1호 의안을 표결에 붙여서 사회 W의 진행하에 같은 날 10:48경 표결이 시작되어서 같은 날 11:10경 집계 완료 후 회의가 속개되었고, 표결결과 참석 의결권수인 8,418만 1,883주 중 99.38%인 8,366만 3,158주의 찬성으로 제1호 의안이 원안대로 통과되었다.

(3) 제2호 의안의 상정과 통과, 주위적 원고들의 주주총회 퇴장

㈎ 피고 K은 제2호 의안으로 이사 선임의 건을 상정하면서 먼저 사외이사 선임의 건을 안건으로 상정하였고(2-1호 안건), AF위원회 위원장인 AG가 AH, AI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추천경과를 보고하였다. 그 후 주주 AJ가 원안대로 박수로 통과할 것을 동의하였고, 참석 주주들의 대다수가 박수로서 재청하였다.

㈏ 그 후 주위적 원고 C가 발언권을 얻어 피고 회사가 약 1,100억원 가량의 O 증자에 동참함에 있어 당시 이사회의 구성원인 AI 사외이사가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에 관하여 질문하자, 피고 K은 "이 안건은 이 사람들을 후보로 선임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하는 것이 본 안건의 목적입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했든지 그것은 만약에 필요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하면 투표로써 하시고 그 분에 대한 질문은 나중에 하면 답을 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라고 하였고, 대다수 주주가 박수를 치자 "다른 분들 질문하실 분 있으면 하세요"라고 말하였다(86-87p, 을제4호증의 4 16:19).

㈐ 이에 주위적 원고 C가 "아니, 지금의 K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말이지요, 유신정권에 투표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피고 K은 "뭐요, 정신나간 사람들이네, 자 또 질문 있습니까, 아, 여보세요, 어떻게 유신정권의 뭐, 안돼, 질문 안돼요, 그런 소리하지 말아요, 어떻게 이런 자리가 유신정권의, 내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회사라는 소리하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 회사 사람들이 와서 유신이니 어떻느니 그런 말을 하느냐 이거지"라고 하였다(을제4호증의 4 16:53경).

㈑ 그 후 원고 E은 사외이사 선임투표에 관한 판단근거를 위하여 O에 대한 투자에 있어 AI 사외이사 후보의 역할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고 발언하자, 피고 K은 "알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J가 1년에 투자하는 것만 하더라도 8조원 정도 합니다. 압니까, R&D에 쓰는 것을 3조 5천억원 씁니다. 마켓팅에 3조 5천억원 씁니다. 그 많은 것을 이사회에서 우리가 결정을 하는데, 그럴 때에 1천억원 투자한 것에 대해서 그 사람을 평가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고, 그리고 두번째는 의안하고 관계 없기 때문에 후에 질문하면 답을 하도록 해주고 1:1로 면담을 시켜 드리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원고 E의 질문을 받아들이지 않았다(89-90p, 을제4호증의 4 19:15).

㈒ 주주 AK은 다시 O에 대한 투자과정에서 AI 사외이사 후보가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밝혀줄 것을 요구하였고, 다른 주주들은 박수로 위 안건을 통과시킬 것을 제안하였다. 이에 피고 K은 Y 사장으로 하여금 AI 사외이사를 대신하여 답변하게 하였고, 위 Y은 이사회가 O에 대한 출자를 결정한 경위, 그 판단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96-98p).

㈐ 그 후 다른 주주들이 위 안건을 박수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하자, 피고 K은 원안대로 할 것이냐, 표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이의가 없는지 주주들에게 물었고, 이에 주위적 원고 B이 충분한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피고 K은 "그런데 왜 사전에 질문하지 않고 여기에 와서 조그만 건을 내놓고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이지요"라고 하였고, 위 원고 B이 "주주총회 자리에서 주주가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는 것이지요, 그것을 꼭 사전에 우리가 개인적으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라고 하자 피고 K은 "대다수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대로 통과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그것은 시비를 위한 시비지요,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라고 말하여 대다수 주주들이 박수를 치자 "이 안은 표결을 하자는 반대가 없었기 때문에 원안대로 통과합니다"라고 하였고, 이에 주위적 원고 B이 법적으로 다투어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면서 나머지 주위적 원고들 및 원고 E과 함께 주주총회장에서 퇴장하였다(101-102p, 갑제3호증 16:00, 을제4호증의 4 34:40).

⑷ 주주총회의 폐회

피고 K은 위 원고들이 퇴장한 상태에서 주주총회를 계속 진행하여, AH 사외이사를 감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하는 내용의 제2-2호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임기가 만료된 Q 이사를 재선임하는 내용의 제2-3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 제3호 의안인 이사 보수한도 승인의 건이 모두 참석주주들의 박수로써 원안대로 통과되어 같은 날 12:06경 이 사건 주주총회가 폐회되었다.

⑸ 주주총회 퇴장 후 로비에서의 상황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 주위적 원고들과 원고 E은 주주총회장에서 퇴장한 후, 바깥 로비에서 기자들부터 이 사건 주주총회와 관련된 질문을 받아 일문일답을 하던 중, 피고 회사가 T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고용한 진행요원들이 강제로 주위적 원고 A, B을 위 S 건물 밖으로 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주위적 원고 D은 비명을 지르면서 바닥에 넘어졌으며(갑제3호증 16:25-45경), 2004. 2. 27.자로 뇌진탕, 경추염좌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갑제4호증)를 발급받았다.

㈏ 한편, 피고 회사는 위 사건 발생 후 각 언론사에 'J, 주총 소요사안에 대한 경위'란 제목하에 "J는 27일 주주총회장 밖 건물 로비에서 발생한 M단체의 예정에 없었던 기자회견에서 돌발적인 소요사태로 취재에 방해를 드린 것에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당사가 주주총회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 용역을 맡긴 질서유지 진행 담당자들이 예정에 없던 성명발표에 대해 이는 주주총회에 방해가 되니 건물 밖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상호간에 밀고당기는 상황이 발생하였고, 그 과정에 M단체 소속으로 보이는 여성이 넘어졌습니다, 이에 M단체는 물리적 압박이라 하여 거세게 항의하였으며, 당사 간부가 이를 목격하고 M단체의 성명 발표 및 기자회견이 진행되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당사는 오랫동안 주주총회를 해오면서 가능한한 주주간의 물리적 충돌이 생기지 않도록 주주총회 운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으며 금번 주주총회도 동일한 원칙하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만, 주주총회장 밖에서 경비원들과 돌발적인 소요사태가 발생한데 대해서는 심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경비 책임자도 결과적으로는 취재 방해가 된 것을 인지하고 사과를 표명하였습니다, 향후 이러한 사안이 재발하지 않도록 당사는 유념토록 하겠습니다"라는 취지의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나. 쟁점별 판단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위 인정사실을 토대로 이 사건의 쟁점들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1) 명예훼손 내지 모욕 부분

(가) 주위적 원고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 K이 주위적 원고 A와 사이에 언쟁하면서 "아니 대리인이지요, 그런데 나도 주주다, 왜요, 몇 주 갖고 있어요, 왜 남의 회사를 보고 우리 회사라 그래요"라는 취지로 발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① 피고 K은 그 이전의 주총 진행과정에서 주위적 원고들과의 충돌, 특히 주위적 원고 A가 자신을 가리켜 '당신'이라고 지칭한 것에 대하여 상당히 흥분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 K은 위 발언 직후 주위적 원고 A에게 다시 발언기회를 부여한 점, ③ 피고 K의 위 발언이 상법상 소수주주권의 보호 내지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기는 하나[3], 그 발언 내용과 정도, 피고 K이 위 발언을 하게 된 경위와 전후 사정을 종합하여 살펴보면, 피고 K의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주위적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위 원고를 모욕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주위적 원고 A는 피고 K이 발언권을 요구하는 위 원고에 대하여 "여보세요, 우리 주주총회에 왔거든 지금처럼 좀 고분고분 하세요, 아까 처음 시작 때에 여러분들 여기 기자들 많이 와 있으니까 한 번 떠들려고 남의 주총에 온 것처럼 한 것 아닙니까"라는 취지로 발언하여 주위적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① 위 발언 내용이 부적절한 것이기는 하나 이는 피고 K이 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 원만한 의사진행을 당부하는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말한 것으로 보이고, ② 위 발언 직후 위 원고 A에게 발언 기회를 계속 부여한 점 등 그 발언 취지와 내용 등

3) 위 발언과 관련된 주주권침해 여부에 관하여는 아래 (3)의 (다)항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에 비추어 볼 때, 피고 K이 주위적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할 의사로 위 발언을 하였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주위적 원고 A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 K이 주위적 원고 A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위 원고 A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 주위적 원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주위적 원고 B이 피고 회사의 O 출자에 대한 질문을 요청하면서 피고 회사의 홍망에 대하여 언급하자, 피고 K이 "저 친구 저거 정신병 아냐, 저거"라는 취지로 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① 위 발언이 다수의 주주가 모인 주총장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발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주위적 원고 B에 대하여 경멸의 의사를 표시하여 모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비록 피고 K이 주위적 원고 B이 피고 회사의 홍망을 언급하여 상당히 흥분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는 위 원고가 O 관련 질문을 계속 요청하면서 그 질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말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 K의 위 발언의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밖에 주위적 원고 B은, 피고 K이 주주권의 정당한 보장을 요구하는 위 원고에 대하여 '여보세요, 당신네들도 똑똑한 사람들 아냐. 대학 나온 사람들 아냐, 상식 있는 사람들 아냐, 어거지 소리를 하십니까, 우리 회사 이름을 붙이면서 이렇게 와서 주주들을 피곤하게 합니까'라는 취지로 말하여 주위적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고 나아가 모욕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제3호증 73p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K이 그와 비슷한 취지로 발언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주주총회의 전체 맥락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에서 피고 K이 위 발언을 하게 된 경위 및 그 내용, 전후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와 같은 발언만으로는 피고 K이 주위적 원고 B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였다고 볼 수 없다.

㈐ 주위적 원고 C의 주장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주위적 원고 C가 피고 K이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된 자신의 질문을 받아주지 않자 '아니, 지금의 K회장님이 하시는 말씀은 말이지요, 유신정권에 투표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말하자, 위 피고가 "뭐요, 정신나간 사람들이네, 자 또 질문 있습니까, 아, 여보세요, 어떻게 유신정권의 뭐, 안돼, 질문 안돼요, 그런 소리하지 말아요, 어떻게 이런 자리가 유신정권의, 내가 다시 이야기하지만 여러분들 우리 회사라는 소리하지 마세요, 어떻게 우리 회사 사람들이 와서 유신이니 어떻느니 그런 말을 하느냐 이거지"라고 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① 위 발언이 다수의 주주가 모인 주총장에서 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 발언 내용 등을 고려할 때, 피고 K은 위와 같은 발언을 함으로써 주위적 원고 C를 모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비록 피고 K이 주위적 원고 C가 이 사건 주주총회를 유신정권의 투표장에 비유한 것에 상당히 격앙된 상태였던 점은 인정되나, 이는 위 원고가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된 자에 대한 질의과정을 생략한 채 단순히 그 선임안에 대한 가부의 찬반투표를 하겠다는 피고 K의 의사진행[4]에 항의하면서 이를 유신정권의 투표행태에 비유한 것에 불과하므로,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발언의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볼 수는 없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 K은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K의 사용자로서[5]

4) 다만, 피고 K은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된 주위적 원고 C의 발언은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소외 주주 AK의 질문을 받아들여 Y 사장으로 하여금 그 답변을 하게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각자 위와 같은 모욕으로 인하여 주위적 원고 B, C가 입은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폭행 부분

(가)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관한 질문 당시 폭행 여부

1) 먼저, 위 질문 당시 주위적 원고 B, C, 원고 E이 피고 회사 소속의 진행요원들로부터 폭행 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원고들의 뒤에 서 있던 피고 회사 소속 진행요원이 주위적 원고 B의 마이크를 빼앗으려 하였으나 위 원고들의 제지로 뒤로 물러섰고, 이때 피고 K이 위 진행요원에게 뒤로 나가 있으라고 말한 사실, 주위적 원고 B이 계속해서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관한 질문을 하자, 피고 K이 질서유지권을 행사한다고 하였고, 그와 동시에 뒤에 있던 성명불상의 진행요원들이 주위적 원고 B을 끌어내려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원고 E이 오른쪽 복도로 나가 진행요원들과 몸싸움을 하였고, 주위적 원고 C는 진행요원들에 의해 왼쪽 복도로 끌려나가 바지벨트가 풀린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① 주위적 원고 C의 경우, 피고 회사의 진행요원들에 의하여 폭행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② 주위적 원고 B의 경우, 폭행 당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으며[6], ③ 원고 E의 경우, 주위적 원고 B이 들고 있던 공소장을 빼앗기 위해 위 원고가 앉아 있는 좌석으로 들어오는 진행요원을 제지하고, 다시 오른쪽 복도로 나가 진행요원들과 몸싸움을 하던 과정에서 바닥에 넘어졌으나, 이는 상호 몸싸움 과정에서 벌어진 우발적 일로서 당시

5) 피고 K은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겸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장직을 그 의사를 진행하였는바, 피고 K의 위 불법행위는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로서의 직무집행과 관련된 것은 아니고, 피고 회사와 일종의 위임관계에 있는 주주총회 의장으로서의 업무집행 도중 위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 회사는 피고 K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민법 제35조 제1항 본문의 특칙으로서 상법 제389조 제3항, 제210조에 정한 책임이 아니라, 민법 제756조에 정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주위적 원고 B의 바로 옆에 있던 원고 E이 진행요원을 제지하였기 때문에 위 원고 B에게 진행요원이 접근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손에 들고 있던 공소장도 빼앗기지 않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의 구체적인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E이 폭행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2) 다음으로, 피고 K이 위 폭행과 관련한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피고가 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할 의무를 부담하기는 하나, ① 위 진행요원들은 피고 K의 의사와 상관 없이 주위적 원고들의 좌석으로 진입한 것이고[7], ② 피고 K은 단상에서 주위에 있던 직원에게 진행요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폭행과 관련하여 피고 K에게 고의 내지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주주총회 퇴장 후 로비에서의 폭행 여부

1) 주위적 원고 A, B, D의 폭행 주장에 관하여 살펴본다.

먼저, 위 원고들이 폭행을 당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주위적 원고들과 원고 E이 주주총회장에서 퇴장 후, 바깥 로비에서 기자들과 일문일답을 하던 중, 피고 회사가 고용한 T 소속 진행요원들이 강제로 주위적 원고 A, B을 위 S 건물 밖으로 끌어냈고, 그 과정에서 주위적 원고 D이 비명을 지르면서 바닥에 넘어져 2004. 2. 27.자로 뇌진탕, 경추염좌로 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고용한 T 소속의 진행요원들이 주위적 원고 A, B, D을 폭행하였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주위적 원고들과 원고 E은 주주총회 행사장 입구 로비에서 피고 회사의 허락을 받지 않고 기자회견을 진행하려 하였고, 위 진행요원들은 위 원고들에게 주주출입 등 주주총회 진행에 방해가 되므로 행사장 입구가 아닌 다른 곳에서 기자회견을 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위 원

7)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K은 오히려 단상에서 주위 직원에게 위 진행요원들이 누구냐고 반문하였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고들이 이를 무시한 채 기자회견을 그대로 강행하였고, 이에 위 진행요원들이 위 원고들을 주주총회 행사장 입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유도하였는데, 주변에 있던 주주들과 이를 취재하던 기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는 과정에서 주위적 원고 D이 비명을 지르면서 바닥에 넘어졌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우선 당시 상황을 녹화한 갑제3호증의 영상과 당시 상황을 취재한 V의 증언을 종합하면, ① 우선, 위 원고들이 주총장에서 퇴장 후 기자들이 몰리는 바람에 자연스럽게 질의응답이 이루어진 것이지 기자회견을 하려 했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② 을제12호증의 기재 및 증인 L의 증언만으로는 위와 같은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인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의 진행이 방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8], ③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비추어 보면, 도저히 위 진행요원들이 위 원고들을 다른 곳으로 안내하거나 유도하는 상황이었다고 볼 수는 없고, ④ 주위적 원고 D이 바닥에 넘어진 것이 위 진행요원들에게 밀린 것인지, 아니면 주위에 몰린 기자들에게 밀린 것인지는 불분명하나, 진행요원들이 주위적 원고들을 강제로 건물 밖으로 끌어내는 일련의 과정에서 위 원고 D이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므로 진행요원들의 위 행위와 주위적 원고 D이 입은 상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이 부분 피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 K이 위 진행요원들의 폭행과 관련하여 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폭행은 ① 시간적으로, 주위적 원고 A, B, D이 주주총회장에서 퇴장한 후에 발생한 것일 뿐만 아니라, ② 장소적으로, 주주총회장 바깥 로비에서 벌어졌으므로, 당시 주총장 안에서 의사를 진행하던 피고 K이 위 폭행사실을 사전에 알았다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피고에게 위 폭행

8) 주위적 원고들과 원고 E이 주총장에서 퇴장한 후, 이 사건 주주총회가 순조로이 진행된 사실은 을제4호증의 4 동영상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과 관련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2) 주위적 원고 C, 원고 E의 폭행 주장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제1호증의 1, 2, 3, 갑제2호증의 각 기재, 갑제3호증의 동영상 및 증인 V의 증언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위 주총장 내 진행요원들과 주총장 밖 진행요원들의 사용자로서, 위 진행요원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주위적 원고 A, B, C, D이 입은 손해를 각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주주질문권의 침해 부분[9][10][11]

㈎ 일반론

1) 주주질문권의 의의

주주질문권이라 함은 통상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의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의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위하여 회사의 임원진에게 회의목적사항에 관하여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고, 이에 대응하는 임원 내지 회사의 의무를 설

9) 주위적 원고들과 원고 E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의장인 피고 K의 의사진행과 관련하여 의사진행발언을 하였고, 의안과 관련된 주주질문도 하였으나 그 구분이 명확하지는 않다. 다만, 의사진행발언의 경우 주주질문권이 원활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점에 관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이하에서는 위 원고들의 '의사진행발언'과 '주주질문'을 통칭하여 '주주질문권의 행사'로 보기로 한다.

10) 주주질문권은 주주가 의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필요조건이나, 우리 상법은 이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이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선례도 축적되어 있지 않다.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바로 주주질문권과 관련된 문제이고, 당사자들 사이의 변론도 이 문제에 집중되어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① 일반론으로 주주질문권의 의의와 입법례, 현행 상법 하에서 주주질문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주주질문권의 인정 범위 내지 한계, 의장의 질서유지권과의 상호관계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 ② 주주질문권의 기능, 특히 우리 기업 현실 하에서 주주질문권이 가지는 의미를 검토한 후, ③ 이를 토대로 이 사건에서 과연 원고들의 주주질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11) 이하 판단자료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피고들이 제출한 논문들과 기타 문헌, 판례 등을 인용하고 그 출처를 명시하나, 그 적용기준, 판단 방법에 관한 책임은 전적으로 이 재판부에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명의무라고 한다[12].

그런데 주주가 회의 안건과 전혀 무관한 질문을 하거나, 동일한 내용의 질문을 반복하여 주주총회의 원만한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주주가 과연 어떤 사항에 대하여 어느 범위까지 질문할 수 있고, 회사가 주주의 질문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즉 주주질문권의 한계 내지 회사의 설명의무의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

현행 상법은 주주질문권 내지 회사의 설명의무에 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다만 상장회사가 임의로 채택하는 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에 관련규정[13]이 있을 뿐이므로, 주주질문권의 인정 여부 및 그 범위 등이 문제된다.

2) 입법례 및 현행 상법상 인정 여부

먼저, 독일 주식법[14]은 제131조 제1항에서 모든 주주는 주주총회에서 의사일정의 목적사항을 적절하게 판단하는데 필요한 범위에서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이사의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31조 제3항에서 설명거절의 사유로서, ① 설명을 제공할 경우 회사 또는 결합기업에게 상당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조세상의 가치평가나 개별조세액에 대하여 설명을 청구한 경우, ③ 대차대조표에 기재된 평가액과 그보다 높은 거래액과의 차액에 대하여 설명을 청구한 경우, ④

---

12) AL, 「회사법강의」 9판(박영사, 2001), 434-435p ; AM, "주주의 질문권과 회사의 설명의무", 상사법연구 제21권 제4호 통권 제36호, 한국상사법학회, 2003, 151-152p ; AN,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의 질문권과 임원의 설명의무", 외법논집 제8집, AO대학교 법학연구소, 2000. 8., 290-291p 참조.

13) 제26조(설명담당자) ① 주주로부터 이사에 대하여 질문이 있을 때에는 대표이사 또는 그가 지명하는 이사가 설명을 행한다. ② 주주로부터 감사에 대하여 질문이 있을 때에는 각 감사가 그 설명을 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이사, 감사는 그의 보조자로 하여금 설명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제27조(설명의 거절) 주주의 질문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명을 거절할 수 있다. 1. 질문사항이 회의의 목적사항에 관한 것이 아닐 때, 2. 설명을 함으로써 주주공동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하는 경우, 3.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조사를 필요로 하는 경우, 4. 질문이 중복된 경우, 5. 그 외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14) 이하 내용은 AP, "주주의 설명청구권에 관한 연구-서독주식법을 중심으로-", 경영법률연구총서 I - V 1권, 2004. 9. ; AQ, "독일법상 주주의 설명청구권의 수용방안", 비교사법 제8권 2호(통권 15권), 2001. 12.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영업보고서상의 평가 및 감가상각의 방법에 대하여 설명을 청구한 경우, ⑤ 설명의 제공으로 자신이 처벌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고, 제132조에서 설명의무의 이행강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 상법[15] 제237조 제1항 본문은 주주총회에서 주주가 질문을 할 경우에는 그 질문사항에 대하여 이사 내지 감사가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에서 설명거절 사유로서 ① 회의의 목적사항과 무관한 사항, ② 설명하면 주주 공동의 이익을 심각하게 해하는 사항, ③ 설명을 위해 조사를 요하는 사항, ④ 기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들고 있다.

그렇다면 과연,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 상법 하에서 주주질문권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바, ① 주주는 투자자로서 당연히 회사에 대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회사의 경영실적, 자산상태 등에 대하여 질문할 권리를 보유할 뿐만 아니라, ② 주주질문권은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보고사항을 명확히 이해하고, 결의사항에 관하여 의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필요조건으로서, ③ 주주의 총회참석권에 당연히 수반되는 권리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현행 상법에 명문의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주주권에 내재하는 권리로서 당연히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16][17].

3) 주주질문권의 일반적인 한계

주주가 과연 어느 범위까지 질문할 수 있는가, 바꾸어 말하면 회사 내지 임원은 과연 어느 범위까지 주주의 질문에 대하여 설명할 의무를 부담하는지가 문제되는바, 이에 관한 명문의 규정이 없는 현행 상법 하에서는 결국 주주질문권의 인정근거와

15) 이하 내용은 AL, 위 책, 435p ; 동경변호사회 회사법부, "주주총회 가이드라인", 상사법무연구회 175-179p 참조.
16) AL, 위 책, 435p
17) 피고들도 주주총회에서 질문권이 주주권에 내재하는 권리라는 점에 관하여는 특별한 다툼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2004. 6. 17.자 준비서면 6p).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취지 등에 비추어 그 내재적 한계를 설정하고, 주주총회의 원활한 운영과 주주질문권의 남용방지 측면을 고려하여 합리적 범위 내에서 조리에 따라 그 인정 범위를 확정지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기준에 터잡아 앞서 본 외국의 입법례, 표준주주총회 운영규정상 관련 규정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일응 ① 주주총회의 회의목적사항과 전혀 무관한 질문[18], ② 회사나 주주공동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질문[19], ③ 설명을 위하여 상당한 조사를 요하거나 장시간이 소요되는 질문[20], ④ 그 밖의 정당한 사유[21]를 주주질문권의 일반적인 한계 내지 회사의 정당한 설명거절의 사유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위와 같은 기준은 일반적·추상적 기준에 불과하고, 실제로 개별 사안에서 주주질문권이 정당한 범위 내의 것인지가 문제된 경우에는, 주주에게 발언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는지 여부, 당해 질문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 취지, 회의목적사항과 관련한 질문의 필요성, 회사 내지 임원의 설명의 방법과 정도, 그 질문을 전후한 주주총회의 진행 과정 등 구체적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를 매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4) 의장의 질서유지권과의 상호관계

---

18) 주주질문권은 기본적으로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의안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아 의결권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위한 것이므로, 회의목적사항과 전혀 무관한 임원의 정치신조나 신앙에 관한 내용 등은 당연히 질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19) 질문사항이 회사의 영업비밀 사항에 속하는 경우 등에는 그 설명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회사는 주주들에게 당해 질문사항이 회사의 기밀사항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를 누설할 경우 회사 및 주주의 공동이익을 해친다는 점에 대하여는 적절한 설명과 이해를 구해야 할 것이다.

20) 주주총회의 원만한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장시간의 조사 내지 연구를 요하는 사항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는 회사가 그 설명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주주총회일보다 상당한 기간 전에 사전질문서 형식으로 질문사항을 통지한 경우에는 회사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그 설명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일본 상법 제237조의3 제2항 참조).

21) 예컨대, 설명을 요구받은 해당 임원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제3자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조사에 막대한 비용이 드는 경우 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주주총회의 의장은 총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사를 정리하며(상법 제366조의2 제2항), 그 총회장에서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언동을 하거나 현저히 질서를 문란케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는바(상법 제366조의2 제3항), 의장은 이러한 질서유지권에 터잡아 원만한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주주의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22].

예컨대, 주주 1인이 장시간 발언권을 독점한다거나, 이미 충분한 설명이 되었음에도 동일한 질문을 계속 반복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의장은 다른 주주들의 발언권 보장 및 원만한 의사 진행을 위하여 질서유지권에 터잡아 질문자의 발언 시간을 제한, 중단할 수 있고, 의장의 정당한 질서유지권 행사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그 발언을 금지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23].

다만, 주주총회 의장은 의사진행의 주체로서 주주들에게 적절한 발언 내지 질문 기회를 보장하여 줄 의무가 있는바, 주주가 정당한 질문권을 행사하였음에도, 의장이 이를 임의로 제한하는 것은 질서유지권의 한계를 벗어나 주주질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결국 주주질문권과 의장의 질서유지권이 서로 충돌할 경우 역시 주주질문권의 인정 범위 내지 한계의 문제로 귀착된다고 할 것이다.

㈏ 주주질문권의 기능과 그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

주주질문권은, ① 주주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회의목적사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회사의 영업실적, 경영상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정보기능), ② 주주로 하여금 주주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함으로써 주주총회의 형해화를 방지하고 주주총회를 활성화·실질화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주주민주주의 실현에

22) AM, 위 논문, 167p
23) AN, 위 논문, 295-296p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기여하며(주주총회의 활성화 · 주주민주주의 실현기능), ③ 회사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함으로써 사전에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억제하고(사전적 감시기능, 위법행위 억제기능), ④ 경영진의 업무 집행행위를 사후적으로 감독함으로써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위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하며(사후적 감독기능, 위법행위 시정기능), ⑤ 주식수가 아니라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분배된다는 점에서, 대주주 내지는 지배주주의 전횡으로부터 소수주주의 발언권을 보호하는(소수자보호기능)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가 2005. 3.경 배포한 '주요 대기업집단정책 설명자료'(갑제14호증)에는, 2004. 4. 1. 기준으로 13대 민간대기업집단[24]의 경우 총수일가는 3.4%(본인 지분 1.5% + 친인척 지분 1.9%)의 지분만으로 40% 정도의 계열회사 지분을 이용하여 기업집단 전체를 지배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소유지배구조는 ① 계열사간 순환출자를 통해 형성한 가공자본과 ② 금융계열사 고객자산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하고, 총수(일가)의 실제 소유지분(cash flow right)과 의결지분(voting right) 사이의 괴리를 유발함으로써 소유지배구조를 왜곡시킨다고 기재되어 있는바, 이러한 우리 기업 현실 내지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하에서는 주주질문권의 기능이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위와 같은 대기업 소유지배구조 하에서는 소수의 지분율을 가진 그룹 총수 내지 지배주주가 계열사간 상호 출자를 통하여 그 지분율을 훨씬 상회하는 주주권을 행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별 회사의 경영진에 관한 임면권을 행사하여 주주총회, 이사회 등을 장악함으로써 내부 통제기능을 마비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탈법적 · 비정상적 거래행위를 통하여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항상 존재한다.

---

24) 총수가 있고 자산규모가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을 말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물론, 현행 상법과 증권거래법은, 한편으로는 다수결의 원칙하에서 다수파주주의 전횡을 막고, 다른 한편으로는 단독주주권으로 했을 경우의 개별 주주에 의한 주주권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주제안권(상법 제363조의2,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4)[25], 대표소송(상법 제403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1항)[26], 이사·감사 해임청구(상법 제385조 제2항, 415조,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3 제4항)[27] 등 소수주주권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만[28], 대기업의 경우 그 자산규모 및 주식 시가 등을 고려할 때, 소수주주들이 위와 같은 소수주주권을 행사하기 위한 지분율을 확보하는 것이 결코 용이하다고 볼 수만은 없고[29], 따라서 앞서 본 우리 대기업의 지배구조 및 그 지분율 분포를 고려할 때, 위와 같은 소수주주권에 관한 규정만으로 소수주주가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거나 주주총회에서 소수자보호의 원칙이 관철될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주주질문권은 총회에 참석한 주주의 주식수에 관계 없이 인정되는 단독주주권이자 공익권일 뿐만 아니라, 또한 소수주주권에 비하여 그 행사에 드는 노력, 시간, 비용이 저렴하고 간편하므로, 소수주주 입장에서는 자신의 주주권을 보호하고 그 권한을 실행하는데 유용한 수단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주주질문권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대기업 특유의 지배구조에 따른 내부 통제기능 마비,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① 대기업 내부에서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감시하여 이를 사전에 억제하거나, 사후적으로 시정하고, ② 지배주주의 전횡으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25) 지분율 상법 100분의 3, 증권거래법 1,000분의 10
26) 지분율 상법 100분의 1, 증권거래법 1만분의 1
27) 지분율 상법 100분의 3, 증권거래법 1만분의 50
28) 이상 AL, 위 책, 239p
29) 예컨대, 피고 회사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 897,513,820,000원, 발행주식의 총수는 173,452,764주(보통주식 150,359,337주 + 우선주식 23,093,427주)인바, 피고 회사 주식의 시가를 고려할 때 소수주주가 상법 내지 증권거래법상의 지분요건을 채우는 것은 쉽지 않은 일로 보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따라서, 주주질문권의 인정 범위과 그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을 함에 있어서는, 주주질문권의 남용으로 인한 폐해 내지 위험성을 충분히 감안하되, 동시에 앞서 본 주주질문권의 기능, 특히 우리 기업의 소유지배구조 하에서 주주질문권이 가지는 의미, 중요성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30].

㈐ 이 사건에서의 검토

앞서 본 주주질문권의 일반론, 주주질문권의 기능과 그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 기준을 토대로, 과연 이 사건에서 주위적 원고들 내지 원고 E, 예비적 원고들의 주주질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먼저, 주위적 원고들의 주주질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주위적 원고들이 각 예비적 원고들로부터 그 주주권을 위임받아 예비적 원고들을 대리하여 이 사건 주주총회에 참석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그 대리행위에 따른 법률효과는 해당 주주권의 귀속주체인 예비적 원고들에게 귀속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설령 피고들이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주주질문권을 침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그 주주권의 귀속주체인 예비적 원고들이라고 할 것이므로, 이 부분 주위적 원고들의 주장[31]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원고 E, 예비적 원고들의 주주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하에서는 우선 이 사건 주주총회의 진행 단계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한 후,

30) 국민으로부터 법을 해석하여 현실에 적용할 권한을 위임받은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법 내지 권리를 화석화된 문자로 해석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법이 적용되는 구체적 현실과 그 법 적용의 결과를 도외시하거나 무시할 없고, 이를 충분히 감안할 수 밖에 없다.

31) 주위적 원고들의 '주주권의 대리권한' 자체가 침해될 경우 별도로 불법행위 성립 여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나, 위 원고들은 '주주권'이 침해되었음을 전제로 이 부분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을 뿐, 대리권한 자체의 침해에 관한 주장은 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이를 종합한 결과는 아래 3)항에서 다시 살펴보기로 한다.

(ⅰ) 보고사항

피고 K이 보고사항의 보고에 들어가기에 앞서 보고사항에 대한 질문은 회의목적사항을 상정한 후에 받겠다고 하였고, 이에 주위적 원고 A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으나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 감사위원 X이 감사보고를, 사장 Y이 영업보고를 마친 후, 주위적 원고 A, B이 다시 위 보고사항에 대한 주주질문권을 신청하였으나 피고 K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대로 제1호 의안을 상정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① 상법상 이사는 영업보고서를 정기총회에 제출하여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고(제449조 제2항), 감사는 이사가 주주총회에 제출할 의안 및 서류를 조사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하거나 현저하게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주주총회에 그 의견을 진술하여야 하는바(제413조), 이러한 보고의무의 이행에는 필연적으로 보고사항을 주주들이 알 수 있도록 설명해 줄 의무가 수반되므로, 이에 대응하여 주주의 질문권도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는 점[32], ② 회의목적사항에는 보고사항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보아야 하고, 이 사건 주주총회의 주주총회소집통지·공고사항(을제5호증의 1)에도, 보고사항(감사보고, 영업보고, 주식소각 결과보고)이 부의안건과 함께 회의목적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점, ③ 주위적 원고들이 소속된 M단체는 이 사건 주주총회가 개최되기 이전인 2004. 2. 24. 위 총회에서 영업보고와 관련,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피고 회사의 임원에 대한 징계여부,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된 피고 회사의 내부절차, 당시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던 불법정치자금 제공과 피고 회사가 관련이 있는지 여

32) AM, 위 논문, 154p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부에 관하여 질문하겠다는 내용의 질의서를 통보하였으므로, 피고들은 보고사항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예상하고 이를 준비할 수 있었던 점, ④ 주주총회에서 보고사항은 그 자체가 주주의 찬반의사를 묻는 것이 아니라, 회사 임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수령하고, 그 경영실적을 평가하며, 차후 경영진에 대한 책임추궁을 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의미를 가지는 점[33], ⑤ 피고 K이 보고사항에 관한 질문을 받지 않겠다는 점에 관하여 주주들에게 사전 동의를 구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 K이 주위적 원고 A, B의 보고사항에 관한 질문 내지 발언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한 것은 의장의 의사진행권 내지는 질서유지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 원고들이 행사한 주주권의 귀속주체인 예비적 원고 F, G의 주주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다.

(ii) 제1호 의안 상정 직후

피고 K이 제1호 의안 재무제표 승인의 건을 상정하였고, 주위적 원고 A가 큰소리로 "주주번호 Z, F 대리인 A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주총목적 사항에 대한 토론만이 주주총회의 목적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면서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자, 피고 K은 "주주총회의 질서유지권을 위해서 만약 시끄럽게 하면 의장의 직권으로 제제조치를 가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의사를 그대로 진행한 사실, 이에 주위적 원고 A가 다시 항의하자, 피고 K은 "이것 시끄럽게 하는 사람들은 진행들이 좀 가도록 해요"라고 말하면서 의사를 그대로 진행하였고, 위 원고 A는 "아니 의장, 글로벌 기업을 지향한다는 J가 주주총회를 어떻게 이렇게 진행합니까, 이것이 J의 주주총회입니까"라고 말하는 등 계속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면서 격렬히 항의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33) AN, 위 논문, 304p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보고사항에 관하여도 주주의 질문권은 당연히 인정되고, 따라서 보고사항에 관한 질문을 주주들의 동의 없이 사전에 원천봉쇄한 피고 K의 의사진행은 주주질문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의사진행에 대하여 주위적 원고 A가 의사진행발언을 신청하였음에도, 피고 K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채 그대로 의사일정을 진행한 것은 주주의 발언권 내지는 총회절차 참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위 원고 A가 행사한 주주권의 귀속주체인 예비적 원고 F의 주주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할 것이다.

(iii)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관한 질문

주위적 원고 B이 피고 회사의 임원들인 AB, Q, AC가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였다고 하면서, 위 임원들에 대하여 회사 윤리강령에 따른 징계조치를 강구하고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질문하였고, 이때 원고 E은 옆에서 피고 회사의 윤리강령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던 사실, 피고 K은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건이므로 회사로서는 어떠한 조치도 취하고 있지 않다고 하면서, 플래카드를 내려 놓으라고 말한 사실, 위 원고 B은 다시 U에 대한 공소장을 제시하면서 "이런 부정을 두고 보고도 명백하게 온 국민이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그대로 놔두면 회사가 망하는 것 아닙니까?"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 K은 "여보세요, 여기에 누가 그 분들이 부정을 해서 회사 돈을 가지고 간 것입니까"라고 말하였고, 위 원고 B이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압니다, 그것을 지금 어디서 부정을 하는 것입니까?"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 K은 "자, 의장이 질서유지권 유지해요"라고 말하였고, 이와 동시에 피고 회사의 진행요원들이 주위적 원고 B을 끌어내려 하자 주위적 원고들과 원고 E이 이를 제지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진 사실, 주위적 원고들과 원고 E이 퇴장한 후, 임기가 만료된 Q 이사를 재선임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는 내용의 제2-3호 사내이사 선임의 건이 참석 주주들의 박수로서 통과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제11, 1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U는 2003. 12. 26. 서울지방검찰청 2003형제134545호로 정치자금에관한법률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그 공소사실 제1의 가.항에 "피고인(U를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당시 AE당 사무총장 겸 AE당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공소외 AR, 재정위원장이었던 공소외 AS, 재정국장이었던 AT과 공모하여, 2003. 11. 초순경 위 AR은 P그룹이 P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인 공소외 AD를 통하여 같은 해 9.경부터 11. 초순경까지 사이에 합법적인 정치자금 20억원, 비합법적인 정치자금 40억원 등 도합 60억원의 정치자금을 AE당에 기부하였으나 그 금액이 예상보다 적다고 판단하고 위 AS에게 "P그룹이 예상보다 대선자금을 적게 냈으니 추가로 대선자금을 내 달라고 요청해달라"고 부탁하고, 위 AS은 위 AD를 통하여 P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인 공소외 Q에게 추가 대선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피고인은 그 시경 서울 강남구 AU빌딩 소재 법무법인 AV 회의실에서 위 Q의 지시를 받고 온 P그룹 구조조정본부 부사장 AB를 만나 P그룹으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채권 형태로 교부받기로 약속한 후, 같은 달 중순경 위 법무법인 AV 회의실에서 피고인이 위 AB로부터 액면금 도합 55억원 상당의 무기명 국민주택채권을 전달받고 같은 달 하순경 위 법무법인 AV 회의실에서 피고인이 위 AB로부터 액면금 도합 57억원 상당의 무기명 국민주택채권을 전달받아 그 시경 서울 마포구 AW에 있는 AE당 당사에서 AE당의 대선자금 전반에 관한 실무책임자인 위 AR의 지휘를 받는 위 AT에게 이를 건네주고, 위 AT은 위 AR에게 그 사실을 보고한 후 위 AR과 함께 대선비용 등으로 이를 사용하는 등 정치자금에관한법률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국민주택채권 액면금 합계 금 112억원을 수수하고,"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AC는 피고 회사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당시 대통령이었던 AX에게 뇌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물공여를 함으로써 피고 회사에게 손해를 입혔다는 이유로 손해배상(기) 청구 소송을 제기 당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먼저, 위와 같은 불법 정치자금에 관한 질문이 이 사건 주주총회의 회의목적사항과 관련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위 공소장에 P그룹이 AE당에 불법으로 합계 112억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피고 회사는 P그룹의 핵심 회사인바, 당시 검찰 조사 내지 언론보도를 통하여 P그룹의 불법 정치자금 제공 문제가 널리 알려진 상황에서,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는 당연히 위와 같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 명목으로 피고 회사의 자금이 유출되거나, 그 임원진이 이에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질문할 권리를 보유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다만, 구체적으로 질문을 요구받은 임원 그 자신이 형사처벌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명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② 과거에도 임원이 피고 회사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뇌물을 제공한 전례가 있었으므로, 피고 회사의 주주로서는 위와 같은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하여 피고 회사의 자금이 유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충분히 의혹을 가질 수 있고, 회사 자금의 유출은 결국 주주 개인에게도 피해가 미치므로, 주주로서는 이에 대하여 당연히 질문할 권리를 보유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③ 위 공소장에 언급된 Q는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임기가 만료되어 사내이사로 재선임되었는바, 위 질문은 위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에 대한 합리적 의결권 행사를 위하여서도 필요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질문은 회의목적사항과 관련된 것이고, 그 질문의 필요성도 인정된다.

다음으로, 주주질문권 침해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① 피고 회사의 진행요원들은, 질문을 하던 주위적 원고 B에게 달려들어 공소장을 빼으려고 하는 등 그 질문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였고, ② 피고 K은, 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 의사를 정리하고 주주들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질문권을 보장하며, 그 신변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위와 같이 진행요원들이 달려들어 주위적 원고 B의 질문을 방해하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거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34], 결국 위 원고 B이 행사한 주주권의 귀속주체인 예비적 원고 G의 주주권을 침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와 관련, 원고 E의 주주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 원고가 주위적 원고 B이 질문을 할 당시 옆에서 피고 회사의 윤리강령이 기재된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고, 그 무렵 주위적 원고 B의 질문을 막으려 했던 피고 회사의 진행요원들과 몸싸움을 벌인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주위적 원고 B이 질문하는 것을 옆에서 보조하거나 위 원고 B을 보호하기 위하여 벌인 행동이므로,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 E의 주주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iv) 위 질문 직후 피고 K의 발언

위와 같은 상황이 종료된 직후, 피고 K이 다시 의사를 진행하면서 "자, 이의 없습니까"라고 말하자, 주위적 원고 A, B이 큰소리로 "이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발언권을 달라고 하였고, 이에 피고 K이 "가만 있어요, 목소리를 좀 적게 하세요,

---

34)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진행요원들은 피고 K의 의사와 상관 없이 주위적 원고들의 좌석으로 진입하였고, 피고 K은 단상에 있던 직원에게 진행요원들이 위와 같은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지시하였으므로, 위 피고에게 폭행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지만, ① 이 부분은 주주권 침해에 관련된 문제로서, 앞서 본 폭행의 점과 구별되고, ② 피고 K은 주주총회 의장으로서 주주의 신변을 보호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③ 위와 같은 폭행에 바로 앞서 성명불상의 진행요원이 질문을 하던 주위적 원고 B의 마이크를 뺏으려 하였으나 주위적 원고들이 제지하자 뒤로 물러난 상황이 벌어졌는바, 주총 의장인 피고 K으로서는 진행요원들이 위와 같은 과도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분명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하여 주주의 질문권 내지 그 신변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단지 "아, 그 진행은 뒤로 나가, 진행이 왜 그래요, 진행은 옆에 나가"라고 말하여 이를 그대로 방치하였고, ④ 위 폭행 바로 직전에 원고 E이 들고 있던 플래카드를 내리라고 하였는바, 위 플래카드는 주위적 원고 B의 질문 내용과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질문자료이고, 위 플래카드의 게시로 인하여 피고 회사 내지는 다른 주주들에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없었으므로, 피고 K이 이를 철거하라고 지시한 것은 의장의 질서유지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이며, ⑤ 위 폭행이 벌어질 당시 단상에 있던 직원에게 이를 말리도록 소극적 지시를 하였을 뿐, 그 폭행행위를 적극적으로 제지한 흔적은 찾아볼 수 없고, ⑥ 폭행 상황이 모두 종료된 다음에야 진행요원들에게 진행만 보라고 지시하였을 뿐, 주위적 원고 B을 포함한 주주들에게 그 어떤 유감의 표명도 없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 K은 주주총회 의장으로서 업무상 주의를 위반하여 예비적 원고 G의 주주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왜 그렇게 고함을 지릅니까, 아니, 왜 남의 주총장에 와서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요"라고 말하자 위 원고들이 "남의 주총장이라니, 우리 회사지 왜 남의 주총장이야"라고 말하면서 격렬히 항의하였고, 주위적 원고 A는 "의장, 당신이 주인이 아니라 우리가 주인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주인이고 당신은 주주의 대리인이야"라고 말한 사실, 이에 피고 K이 "아니 대리인이지요, 그런데 나도 주주다, 왜요, 몇 주 갖고 있어요, 왜 남의 회사를 보고 우리 회사라 그래요"라고 말한 사실, 그 후 주위적 원고 A가 발언권을 달라고 계속 요청하자 "안주겠어요, 어떻게 우리 회사를, 몇 주 갖고 있는데 '당신' 소리하면서 그렇게 남의 주총장에 와서 목소리를 올려, 몇 주 가지고 있어요, 나도 주주요"라고 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주주의 권리 중에는 의결권과 같이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권리의 내용이 양적으로 증감하는 비례적 권리가 있는 반면, 주식수의 다과를 불문하고 모든 주주에게 균등하게 분배되는 비비례적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인바[35], 주주질문권은 단독주주권으로서 모든 주주에게 그 소유주식수에 상관 없이 동등한 권리가 부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절대적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비비례적 권리라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K이 주위적 원고 A의 발언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감정이 격한 상태에서 위와 같은 발언을 하였다는 점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위 발언은 상법상 주주평등의 원칙 내지는 소수주주보호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여 주위적 원고 A가 대리행사한 예비적 원고 F의 주주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발언이었다고 할 것이다.

(v) O 투자에 관한 질문

주위적 원고 A가 피고 K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어 피고 회사가 O에 대한 출

35) AL, 위 책, 241p 참조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자로 인하여 손실을 입었다고 하면서 피고 회사가 O에 출자하여 지배주주가 된 경위, 그 지분의 처분계획, 피고 회사가 O의 2003. 5. 30. 유상증자시 약 1,100억원의 증자참여 결정을 할 때에 외부의 전문기관으로부터 O의 현황 및 미래 사업전망에 대하여 자문을 구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와 그 내용 등에 관하여 약 7-8회에 걸쳐 질문하였고, 피고 K과 Y 사장은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위 원고의 질문들에 대하여 설명한 사실, 주위적 원고 A는 그 후에도 다시 O 투자와 관련된 질문을 계속하려 하였으나 참석 주주들 중 상당수가 위 원고 A의 계속된 질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 이에 피고 K은 원만한 주주총회의 운영을 위하여 더 이상의 질문은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말하면서 주주총회 후 회사로 찾아오면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한 사실, 주위적 원고 A, B은 계속하여 피고 K에게 제1호 안건과 관련된 질문에 대하여 발언권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고 K은 더 이상 질문은 받지 않고, 회사로 찾아오면 성실히 답변하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반복하였고, 이의가 있으면 수정동의안을 내라고 말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주주총회의 의장은 어느 한 주주에 의하여 동일한 내용의 질문이 반복될 경우에는 다른 주주들의 발언권 보호 및 원활한 주주총회의 운영을 위하여 그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인바, ① 피고 K은 Y 사장으로 하여금 주위적 원고 A의 O 관련 질문들에 대하여 답변하도록 하였고, 위 Y은 상당한 시간에 걸쳐 피고 회사의 O에 대한 최초의 출자 배경과 향후 처리계획, O의 유상증자에 참여할 당시 자문을 받았던 외부기관 등에 관하여 설명한 점, ② 위와 같은 질문과 설명은 주위적 원고 A의 요청에 따라 일문일답의 형식으로 이루어진 점, ③ 주위적 원고 A가 O와 관련된 질문을 반복하자, 상당수의 주주들이 이의를 제기한 점, ④ 위 Y의 설명의 정도 등에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평균주주를 기준으로 볼 때 O에 대한 출자 문제에 관하여는 일응 주주가 제1호 의안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하기에 필요한 정도로 설명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와 같은 일문일답을 마친 후, 피고 K이 주위적 원고 A, B의 동일한 내용에 관한 반복된 질문을 제한한 것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한 정당한 의사진행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다.

(vi) 사외이사 선임에 관한 질문

AI이 사외이사로 추천되자, 주위적 원고 C와 원고 E이 피고 회사의 O에 대한 출자와 관련 당시 이사회의 구성원이었던 AI 사외이사가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에 관하여 질문한 사실, 피고 K은 처음에는 위 원고들의 질문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주주 AK으로부터 다시 O에 대한 출자과정에서 AI 사외이사 후보가 찬성을 했는지, 반대를 했는지 밝혀줄 것을 요구받은 다음, Y사장으로 하여금 AI 사외이사를 대신하여 답변하게 하였고, 위 Y은 이사회가 O에 대한 출자를 결정한 경위, 그 판단 근거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한 사실, 그 후 다른 주주들이 위 안건을 박수로 통과시킬 것을 제안하자, 피고 K은 원안대로 할 것이냐, 표결할 것이냐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면 원안대로 통과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하면서 이의가 없는지 주주들에게 물었고, 이에 주위적 원고 B이 사외이사 후보에 대한 충분한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이의를 제기한 사실, 피고 K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를 하고 그대로 통과하자는 의견이라고 하면서 주주들의 의견을 물었고, 대다수 주주들이 박수로서 이에 동의를 표시하자, 위 피고는 원안대로 통과되었다고 선언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살피건대, AI 사외이사 후보 선임 안건과 관련하여, 주위적 원고 C, B, 원고 E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이 AI 사외이사 후보의 능력과 자질을 판단하기 위하여 AI의 사외이사 재직 중 직무 집행에 관하여 질문하는 것 자체는 정당한 질문권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보이나[36], ① 주위적 원고 C와 원고 E이 AI 사외이사에 대하여 질문하려 했던 사항은 결국 피고 회사의 O에 대한 출자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에 관하여는 이미 주위적 원고 A가 7-8회에 걸친 질문을 하였고, Y 사장이 일문일답 형식으로 상당한 정도의 설명을 했었던 점, ② 앞서 본 바와 같이 O 출자에 관한 피고 회사의 설명은 그 형식 및 내용에 비추어 일응 적절한 범위 내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 K은 처음에는 주위적 원고 C와 원고 E의 질문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나, 그 후 주주 AK으로부터 재차 설명을 요구받고 Y 사장으로 하여금 그 질문에 대하여 설명을 하도록 한 점, ④ Y 사장은 이사회가 O에 대하여 출자를 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비교적 상세히 설명하였고, AI도 피고 K을 통하여 위 Y 사장의 설명이 맞다고 출석 주주들에게 밝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합리적인 평균주주를 기준으로 볼 때 O에 대한 출자와 관련하여 의안인 사외이사 AI의 연임 여부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정도로 설명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K이 주위적 원고 C, 원고 E의 질문을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의사절차상의 하자는 주주 AK으로부터 재차 설명을 요구받고 Y 사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하게 함으로써 치유되었고, 위 원고들로서도 Y 사장의 위와 같은 설명을 통하여 O에 대한 출자 당시 AI 사외이사가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의 정보를 제공받았다고 보아야 하며, 그 이후 위 원고들 내지 다른 주위적 원고들의 반복된 질문을 제한한 것은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한 정당한 의사진행권의 행사로

36) 이 사건 주주총회소집통지·공고사항(을제5호증의 1)에도, 사외이사 후보자 AI의 생년월일, 주요 학력과 경력 등과 함께 AI이 2003. 5. 26. 개최된 피고 회사의 이사회에 참석하여 'O 유상증자 참여의 건'에 대하여 찬성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보이므로, 이 부분에 관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주주질문권의 침해 여부는, 어느 특정 질문 하나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주주총회 전체의 진행 과정 속에서 과연 당해 주주의 질문권이 충분히 보장되고, 회사가 상당한 정도의 설명을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매우 신중히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앞서의 개별 검토를 토대로, 과연 원고 E 내지 예비적 원고들의 주주질문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종합적·전체적으로 살펴본다.

(i) 먼저, 피고 K은 이 사건 주주총회를 개최하면서 주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보고사항에 대한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주위적 원고 A, B의 의사진행발언 내지 질문을 불허함으로써, 위 원고들이 대리 행사한 주주권의 주체인 예비적 원고 F, G의 주주권을 제한하였다.

(ii) 또한, 제1호 의안의 상정 전후 과정에서, 위와 같은 피고 K의 일방적인 의사 진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주위적 원고 A의 의사진행발언을 불허함으로써, 위 원고가 행한 주주권의 주체인 예비적 원고 F의 주주권을 제한하였다.

(iii) 그 후 주위적 원고 B이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된 질문을 할 당시, 피고 회사의 진행요원들은 정상적으로 질문을 하고 있던 위 원고 B에게 달려들어 그 질문 자료인 공소장을 뺏으려고 하여 위 원고의 질문을 직접적으로 방해하였고, 피고 K은 주주총회 의장으로서 위와 같은 진행요원들의 부적절한 행동을 사전에 억제하거나, 사후적으로 시정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그대로 방치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결국 위 원고 B이 행사한 주주권의 귀속주체인 예비적 원고 G의 주주권을 침해하였다.

(iv) 위와 같은 상황이 종료된 후, 피고 K은 큰소리로 발언권을 요청하는 주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적 원고 A에 대하여 '몇 주 갖고 있어요, 왜 남의 회사를 보고 우리 회사라 그래요'라고 말하는 등 주주평등의 원칙 내지는 소수주주보호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예비적 원고 F의 주주권을 침해하였다.

(v)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K은 부적절한 발언을 통하여 주위적 원고 B, C를 각 모욕하였고, 주위적 원고들과 원고 E은 사외이사 선임의 안건과 관련, 피고 회사가 O에 출자할 당시 이사회의 구성원이었던 AI 사외이사가 어떤 의견을 가졌는지에 관한 자신들의 질문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자 이 사건 주총장을 퇴장하였다.

먼저, 이 사건 주주총회의 전체 진행 측면에서, 예비적 원고 F, G의 주주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주주총회의 진행 과정에서 가장 많은 발언권 내지 질문권을 부여받은 주주들이 바로 주위적 원고 A, B이었다는 점에서, 과연 위 원고들에게 주주권을 위임한 예비적 원고 F, G의 주주권이 침해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살피건대, ① 이 사건 주주총회의 보고사항에 대하여는, 주위적 원고 A, B의 발언 내지 질문이 전혀 허용되지 않은 점, ②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관한 질문 과정에서는, 피고 회사의 진행요원들이 물리력을 행사하여 직접적으로 주위적 원고 B의 질문을 방해하였는바, 주주총회는 회사의 실제 소유자인 주주들이 모여 그 의사를 결정하는 회사의 최고기관으로서 주주민주주의가 실천되는 장이라고 할 것인데, 이와 같은 주주총회에서 유형적 물리력의 행사를 통하여 주주의 발언권 내지 질문권을 침해하는 것은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보아야 하는 점, ③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주위적 원고 A, B이 질문하려 했던 내용들은 회의목적사항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피고 회사의 설명의무가 존재한다고 보이는 점, ④ 이 사건 주주총회 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행 과정에서 피고 K은 주위적 원고 A, B, C 등에게 모욕적인 발언 내지는 주주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하였는바, 이러한 발언을 통하여 주위적 원고 A, B의 발언권이 일부 위축되거나 제약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⑤ O 출자와 관련 주위적 원고 A에게 상당한 시간에 걸쳐 질문 기회가 부여되었으나,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앞서 본 주주권 침해의 위법성이 치유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주주총회의 전체 흐름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피고 K은 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K 내지는 진행요원들의 사용자로서 주위적 원고 A, B의 정당한 질문권 행사를 부당하게 제약하거나 침해함으로써 결국 그 주주권의 귀속주체인 예비적 원고 F, G의 주주권을 침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음으로, 원고 E과 주위적 원고 C에게 주주권을 위임한 예비적 원고 H의 주주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사외이사 선임과 관련 원고 E과 주위적 원고 C의 질문권이 일부 제한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 E과 예비적 원고 H의 주주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마지막으로, 주위적 원고 D에게 주주권을 위임한 예비적 원고 I의 주주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주주총회 과정에서 주위적 원고 D의 발언권 내지 질문권이 침해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원고 D이 상해를 입은 것은 이 사건 주총장에서 퇴장 후 로비에서 벌어진 일로서, 예비적 원고 I의 주주권과는 무관하므로, 이 부분 예비적 원고 I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1) 피고 K은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K의 사용자로서 각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자 피고 K의 모욕으로 인하여 주위적 원고 B, C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2) 피고 회사는 위 진행요원들의 사용자로서 위 진행요원들의 폭행으로 인하여 주위적 원고 A, B, D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3) 피고 K은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K의 사용자로서 각자 주주권 침해로 인하여 예비적 원고 F, G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문제점

주위적 원고 A, B, C, D 및 예비적 원고 F, G은 모두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겪었다고 주장하면서 위자료를 청구하고 있는바, 위 주위적 원고들의 경우 민법 제751조의 규정에 따라 피고 K의 모욕 내지는 피고 회사 진행요원들의 폭행으로 인한 육체적·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예비적 원고 F, G의 경우 과연 앞서 본 주주권의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재산권침해로 인한 위자료의 청구 요건, 위자료 산정에 관한 일반기준 등에 관하여 간략히 검토한 후, 이를 토대로 ① 주주권침해로 인한 예비적 원고 F, G의 위자료 청구권 인정여부, ② 이 사건에 있어서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기준 및 그 액수를 차례로 살펴본다.

나. 재산권침해에 있어서 위자료의 인정 요건

(1)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하지만, 재산상의 손해 이외에 명예나 신용의 훼손 등으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가 있는 경우에는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다361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를 좀 더 상세히 살펴보면, 타인의 불법행위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의 광의의 정신적 손해는, ①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되는 정신적 손해와, ②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로 나눌 수 있고, 위 ②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는 다시 (ⅰ) 재산권침해 그 자체로부터 생기는 정신적 손해와, (ⅱ) 재산권침해에 부수하여 별도의 인격권을 침해함으로써 생기는 정신적 손해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위 (ⅰ)은 특별손해이나, 위 (ⅱ)는 재산권침해로 인하여 통상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견지에서 보면 특별손해임이 틀림 없지만 재산권 이외의 인격권을 별도로 침해함으로써 정신적 고통이 통상 바로 생긴다는 견지에서 보면 통상손해라고 할 것이다[37].

⑵ 이 사건에서 보건대, ① 보고사항에 관하여는 질문 자체가 허용되지 않은 점, ② 소수주주로서의 질문권 내지 의사진행발언권을 확보해달라는 요구가 무시된 점, ③ 특히,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한 질문은 피고 회사 진행요원들의 물리력 행사에 의하여 방해된 점, ④ 주주총회의 의장인 피고 K은 주위적 원고 A에 대하여 "아니 대리인이지요, 그런데 나도 주주다, 왜요, 몇 주 갖고 있어요, 왜 남의 회사를 보고 우리 회사라 그래요", "안주겠어요, 어떻게 우리 회사를, 몇 주 갖고 있는데 '당신' 소리하면서 그렇게 남의 주총장에 와서 목소리를 올려, 몇 주 가지고 있어요, 나도 주주요"라고 말하였는바, 피고 K의 위와 같은 의사진행은 소수주주를 차별 대우하는 것으로서 주주평등 내지 소수주주보호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점[38] 등 예비적 원고 F, G을 대리한

37) 이상 민법주해 채권(11), 420p
38) 기본적으로 자본단체적 성격이 농후한 주식회사에서는 주주에게 그 소유주식수에 비례하여 권리를 부여하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주위적 원고 A, B의 질문과 이에 대한 피고들의 대응 경위, 이 사건 주주총회의 전체 진행 과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예비적 원고 F, G의 경우 주주질문권 내지 그 발언권이 무시되거나, 소수주주에 대한 차별적 대우로 인하여 소수주주로서의 명예 내지 인격권을 침해당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설령 예비적 원고 F, G의 인격권이 직접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더라도, (i) 앞서 본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위 예비적 원고들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소수주주권이 무시되거나 침해됨으로써 단순히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할 것이고, 피고 K은 이 사건 주주총회의 의장으로서 의사일정을 진행한 주체로서, 피고 회사는 피고 K의 사용자로서 위와 같은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ii) 또한, 위 예비적 원고들의 주주권침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계량하거나 확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살펴보는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적용하여[39] 위 주주권침해로 인한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일응 예비적 원고 F, G의 경우에도 이 사건 주주권침해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다. 위자료 산정의 일반적 기준

(1) 정신상의 고통에 대한 무형의 손해에 대하여는 본래 이를 금전으로 계량할 수 없는 것이어서 감정 기타의 증거방법에 의하여 그 액수를 증명할 수 없으므로 당사자

는 비례적 평등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이 통례이고, 이에 따라 의결권 배분, 이익배당 등이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주주질문권에도 위와 같은 비례적 평등의 원칙, 즉 소유주식수에 따라 질문권이 배분되어야 한다는 논의도 충분히 제기될 수 있으나, ① 앞서 본 주주질문권의 의의 및 단독주주권으로서의 법적 성질, ② 현실적으로, 대주주의 의사결정 권한의 독점으로 정보접근 내지 이익분배 등에 있어서 소수주주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상존하고, 특히 앞서 본 우리 대기업소유구조 하에서는 그룹 총수 내지 지배주주가 그 지분율을 훨씬 상회하는 주주권을 행사하여 '소유주식수에 비례한 권리 배분'이라는 비례적 평등 원칙의 의미가 퇴색할 우려가 있는데, 주주질문권이 바로 소수주주를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주주질문권은 그 권한이 남용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모든 주주들에게 공평하게 분배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39) 다만, 이 경우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기 위하여 위자료의 산정기준을 명확히 하여야 할 것인바,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아래 라.항에서 이 사건에 있어서 위자료 산정 기준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는 증거에 의하여 이를 증명할 필요가 없는 동시에 법원은 당사자의 자백 등에 기속됨이 없이 피해자측의 사정 뿐만 아니라 가해자측의 재산 정도, 악의성의 정도를 포함하여 가해자측의 사정까지 모두 참작하여 합리적 재량 범위 내에서 위자료액을 확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특히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입증곤란 등의 이유로 그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의 증액사유로 참작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이러한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은 재산상 손해의 발생이 인정되는데도 손해액의 확정이 불가능하여 그 손해 전보를 받을 수 없게 됨으로써 피해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이를 참작하여 위자료액을 증액함으로써 손해전보의 불균형을 어느 정도 보완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함부로 그 보완적 기능을 확장하여 그 재산상 손해액의 확정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편의한 방법으로 위자료의 명목 아래 사실상 손해의 전보를 꾀하는 것과 같은 일은 허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다카722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모욕, 폭행, 주주권침해는 모두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주위적 원고 A, B, C가 주주질문권 내지 주주발언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① 가해자측인 피고 회사의 사정, ② 침해된 법익인 주주질문권의 의미와 그 기능 및 이 사건 주주총회의 전체 진행 과정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자료를 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③ 특히 주주권의 침해로 인하여 예비적 원고 F, G이 입은 재산적 손해는 구체적으로 산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앞서 본 위자료의 보완적 기능을 감안하여 위자료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라. 이 사건에 있어 구체적인 위자료 산정 기준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1) 먼저, 가해자측인 피고 회사의 사정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주주총회 직전 2003년도 회계 기준으로 매출 43조 5천억원, 순이익 5조 9천억원을 달성한 명실상부한 우리 나라 최고의 기업이자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서 우리 나라 경제의 중심축으로서 경제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하여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 천문학적 불법 정치자금의 제공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고, 사회 일각으로부터 무노조 경영의 신화, 편법 증여를 통한 경영권 승계에 관한 많은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피고 회사가 우리 국민경제 전체, 나아가 사회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 내지 파급력은 실로 막대하다고 볼 수 있고, 피고 회사의 경영 방침 내지 관행이 다른 기업들에게 하나의 표준적 모델로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피고 회사는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는 역할 내지 비중에 걸맞게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여 주주, 채권자, 근로자 등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의 이익을 보호할 사회적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40], 위와 같은 피고 회사의 사회적 책임이 이 사건 위자료액을 산정함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2) 다음으로, 이 사건에서 문제된 주주질문권 내지 발언권의 기능과 의미에 대하여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우리 대기업 특유의 지배구조에 따른 내부 통제기능 마비, 소수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위험성이 상존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주질문권은 ① 대기업 내부에서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감시하여 이를 사전에 억제하거나, 사후적으로

40) 피고 K은 이 사건 주주총회에서 의장인사말을 통해 "주주중시 경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주주로부터의 신뢰는 투명경영과 이익창출, 주주가치 증대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중략)…, 아울러 사회적 책임에도 관심을 쏟아 어려운 이웃을 돕고 그늘진 곳을 보살피는 데 정성과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협력업체와도 한 배를 탄 공동체 관계로써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신뢰받고 사랑받는 회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하여(을제3호증, 8p), 피고 회사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시정하고, ② 지배주주의 전횡으로부터 소수주주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바, 피고 회사로서는 당연히 위와 같은 주주질문권을 최대한 보장하여 경영의 투명성을 제공하고, 윤리경영의 틀을 확립하며, 소수주주를 보호할 의무가 있고, 이는 단순한 윤리적 책임을 넘어서는 법적 의무라고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주주질문권의 기능과 그 의미, 이에 대한 피고 회사의 보호의무 역시 위자료 산정에 있어서 충분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3) 또한, 이 사건에서 문제된 모욕, 폭행 및 주주권 침해는 모두 이 사건 주주총회 당시 소수주주권의 행사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이고, 특히 불법 정치자금 제공과 관련된 질문은 피고 회사 진행요원들의 유형적 물리력의 행사에 의하여 방해된 점 등 위 모욕, 폭행, 주주권침해의 구체적인 경과와 그 태양, 이 사건 폭행과 모욕이 벌어지게 된 경위 및 그 전후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자료액을 정하여야 할 것이다.

(4) 앞서 본 여러 사정과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모욕으로 인한 주위적 원고 B, C의 위자료는 각 1,500,000원, 폭행으로 인한 주위적 원고 A, B의 위자료는 각 1,500,000원, 폭행으로 인한 주위적 원고 D의 위자료는 2,000,000원, 주주권 침해로 인한 예비적 원고 F, G의 위자료는 각 2,000,000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라. 소결론

따라서, ① 피고 회사는, 피고 K 내지는 진행요원들의 사용자로서, 주위적 원고 A에게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명목으로 1,5000,000원, 주위적 원고 B, C에게 각 모욕,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합계 각 3,000,000원(모욕 부분 1,500,000원 + 폭행 부분 1,500,000원), 주위적 원고 D에게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주위적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4. 3.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6. 8.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K은 불법행위자 본인으로서 피고 회사와 각자 위 ①항 기재 각 금원 중 주위적 원고 B, C에게 모욕으로 인한 위자료 명목으로 각 1,5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주위적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04. 3. 1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6. 8.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피고들은 각자 예비적 원고 F, G에게 주주권 침해로 인한 위자료 명목으로 각 2,00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위 예비적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인 2006. 3. 4.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06. 8. 16.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주위적 원고 A, D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 및 피고 K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주위적 원고 B, C, 예비적 원고 F, G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며, 원고 E과 예비적 원고 H, I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문은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게시일자 : 2014-08-01

판사 신인수 _____